

# 定 款



[株]和承素材

# 定 款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상호)

이 회사는 주식회사 화승소재(이하 이 회사라 칭함)라 말한다. 영문으로는 HWASEUNG MATERIAL CO., LTD.라 표기한다.

### 제 2 조 (목적)

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① 연고무의 제조 및 매매업
- ② 피, 브이, 씨 콤파운드의 제조 및 매매업
- ③ 접착제, 접착보조제의 제조 및 매매업
- ④ 합성고무 및 수지용 표면처리제의 제조 및 매매업
- ⑤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
- ⑥ 설비 제조 및 매매업
- ⑦ 전 각호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사업
- ⑧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
- ⑨ 조선기자재제조업 및 매매업
- ⑩ 군납업
- ⑪ 항공기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
- ⑫ 측정,시험평가 및 기술용역업

### 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)

이 회사의 본점은 경상남도 양산시내에 두고 이사회 결의로써 필요한 지역에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 제 4 조 (공고방법)

이 회사의 공고는 부산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 부산일보에 게재한다.

## 제 2 장 주 식

### 제 5 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,000,000주로 한다.

### 제 6 조 (1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,000원으로 한다.

### 제 7 조 (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)

이 회사는 설립시에 100,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### 제 8 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
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써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拾주권, 百주권의 이종으로 한다.

### 제 9 조 (주권 불소지)

이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10 조 (주금 납입의 지체)

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拾전의 비율로써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제 11 조 (명의개서)

- ①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12 조 (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)

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.

## 제 13 조 (주권의 재발행)

- ① 주권의 분할, 병합,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재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14 조 (수수료)

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 15 조 (주주명부의 폐쇄)

-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,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.  
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이주기간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**제 16 조 (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)**

이 회사가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, 주소와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## **제 3 장 주주총회**

### **제 17 조 (소집)**

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.

### **제 18 조 (의장)**

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,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

### **제 19 조 (결의)**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
### **제 20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**

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## **제 4 장 임원과 이사회**

### **제 21 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**

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,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.

## 제 22 조 (이사의 선임)

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결의방법은 제19조에 의한다.

## 제 23 조 (감사의 선임)

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백분의 삼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## 제 24 조 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## 제 25 조 (감사의 임기)

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## 제 26 조 (이사회의 소집)

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2시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
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제 27 조 (이사회의 결의)

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## 제 28 조 (대표이사)

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대표이사(사장) 1명 이상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 29 조 (업무집행)

- ① 사장은 이 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.
- ②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0 조 (감사의 직무)

-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의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## 제 31 조 (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 
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## 제 5 장 계 산

### 제 32 조 (영업년도)

이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제 33 조 (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)

①이 회사의 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대차대조표

2.손익계산서

3.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

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부터 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34 조 (이익금의 처분)

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①이익준비금

②기타의 법정적립금

③배당금

④임의적립금

⑤임원 상여금 약간

⑥후기 이월금 약간

⑦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### **제 35 조 (이익배당)**

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## 부 칙

1. (최초의 영업년도)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2. (발기인) 발기인의 성명,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.  
이와같이 주식회사 화승소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3. 본 정관은 199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정관은 1998년 3월 2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5. 본 정관은 1999년 3월 5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6. 본 정관은 2006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7. 본 정관은 2009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8. 본 정관은 2010년 9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9. 본 정관은 2013년 12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8.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

##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

주식회사 화승화학  
양산군 양산읍 교리 147-1  
대표이사 조 원 영

조 원 영  
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5동 206호

조 정 오  
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동 406호

황 인 택  
부산 금정구 구서동 775-9 일화그린빌라 703호

최 선 진  
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1차 106동 907호

오 상 열  
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592 세종아파트 101동 902호

한 총  
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05-31 삼익아파트 3동 1305호